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등의 용도변경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9 제2호가목2)에 따라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양곡관리법」 제13조제2호”를 “별표 9 제2호가목1) 또는 같은 표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입식품등(양곡관리법」 제13조제2호”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으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으로,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를 “해당 원료의 용도대로 판매하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제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자사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5. 수출계획서(「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에 한한다)

별표 8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할 때 해당 수입식품등이 아닌 검체를 수거하도록 하는 등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된다.

별표 13 II에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통사항 중 별표 8 제1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	-------------	-------------

별표 13 II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목, 가목, 나목, 마목 및 라목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제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를 “자사제품 제조용(외화획득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5. 수출계획서(「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만 해당합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①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별표 9 제2호가목2)에 따라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양곡관리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제조·가공 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28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등의 용도변경 승인) ① -----		

		-----		별표 9 제2호
		-----		가목1) 또는 같은 표 제2호가목2)
		-----		에 따른 수입식품등(양곡관리법」 제13조제2호-----
		-----		-----
		-----		같다)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
		-----		-----
		-----		-----
		-----		외화획득용 원료
		-----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 -----
		-----		해당 원료의 용
		-----		도대로 판매하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		-----
		-----		자사제품 제조용(외화
		-----		획득용 -----
		-----		-----
		-----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3. -----		

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 다만, 용도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가. 나. (생략)

<신 설>

4. (생략)

<신 설>

③ · ④ (생략)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primary-ruled paper. It features ten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set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lines. Thes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for young learners.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re are no margins or other markings present.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
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5. 수출계획서(「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에 한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입식품정책과	
연 락 처	043-719-2168